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8호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직렬(직급) 및 인원

선발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공업 (일반전기) 9급	1명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전기분야 사업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이력 관리 - 시설 관련 행정업무 ○ 전기분야 학교시설 안전 점검 업무 ○ 기타 기관(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2.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적용 기준일: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남성은 군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자격요건 ※ 기준일: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임용직렬	자격요건
공업 (일반전기)	○ **아래 각 호의 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상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기 관련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전기 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무대조명전문인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임용직렬	자격요건
	전기 관련 자격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산업기사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또는 입상) **후, 임용예정 직무관련분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개인사업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다. 우대요건 ※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구분	우대요건(가점 부여)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은 제외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또는 입상) **후, 임용예정 직무관련분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 중 · 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가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5항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으로 함

4.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9.(월) ~ 2026. 11. 11.(수)	2026. 11. 19.(목)	2026. 11. 23.(월)	2026. 11. 26.(목)	2026. 12. 3.(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공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 새소식·인사·채용-임용정보-지방공무원)에 게시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누리집에 게시

5.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6. 11. 9.(월) 09:00 ~ 11. 11.(수) 18:00 (3일간)

구분	접수방법	접수시간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온라인교직원채용	09:00~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제출서류	직접방문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마감일('26.11.11.)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별도 제출

○ 응시원서 ☞ 인터넷 접수

①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 바로가기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원서접수 사이트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별도 제출

① 직접방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층 운영지원과

※ 대리제출 가능. 단,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② 등기우편: **원서접수 마감일(2026.11.11.)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층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지방공무원(공업) 경력경쟁 채용서류 재중" 표기하여 발송

다.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에서 응시수수료 면제자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면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증을 출력하여 반드시 확인
- 단, **응시수수료 면제자 검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 및 환불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원서접수 마감 후 첨부서류의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라.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응시표 출력기간
제3회 임용시험	**2026. 11. 16.(월) 10:00 ~ 11. 26.(목) 10:00까지**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수정·취소】 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목록

※ 아래 순서로 정리하여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제출

제출 서류	내용
1. 제출 서류 목록표	◦ 제출여부에 "✓" 표시하여 제출
2. 응시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접수증 출력물 첨부
3.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제외)
4. 자기소개서 1부	◦ 작성요령에 따라 **A4 2매 분량으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작성요령에 따라 **A4 4매 분량으로** 작성 ※ 임용 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6. 자격증 사본 1부	◦ 직무 관련 자격증
7. 대회 입상 증명서 1부	◦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시간), 직위(직급), 담당 직무, 상근 또는 비상근직(주당 근무시간 명시)을 정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자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 분야 경력 사항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 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증명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 동의서 1부	◦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본인 서명

제출 서류	내용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본인 서명 필수 ◦ 주민등록초본 열람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제출 ◦ 부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제출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본인 서명 필수
13.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응시 자격요건 란에 해당여부 표시 후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14. 위임장 (해당자)	◦ 제출서류 대리 제출인 경우(서명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하실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 새소식·인사·채용-임용정보-지방공무원)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경력사항 등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임용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경력증명이 첨부(확인)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6. 12. 3. ~ 2027. 1. 3.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재공고 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 위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누리집 《새소식·인사·채용-임용정보-지방공무원》란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경력경쟁 채용담당자(044-320-3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